운전중 DMB시청, 단속 할거야 말거야

광주·전남 경찰, 시행 4개월째 적발 전무 실효성 논란 속 사실상 포기 지적도

안하는 걸까, 못하는 걸까.

경찰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며 운전 하는 '무개념 운전자'들에 대한 단속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. 사실상 움직이는 차 안에서 DMB를 보는 운전자를 적발할 '묘수'가 없기 때문이다. 따라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2월 시행된 관련 법은 벌써 '유명무실화'됐다.

광주지방경찰청은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재까지

적발된 차량은 전무하다고 3일 밝혔다.

지난 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'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'이라고 규정하고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·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. 운전 중 DMB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벌금 7만 원,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.

개정 전 도로교통법(49조 1항)은 '자동 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'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,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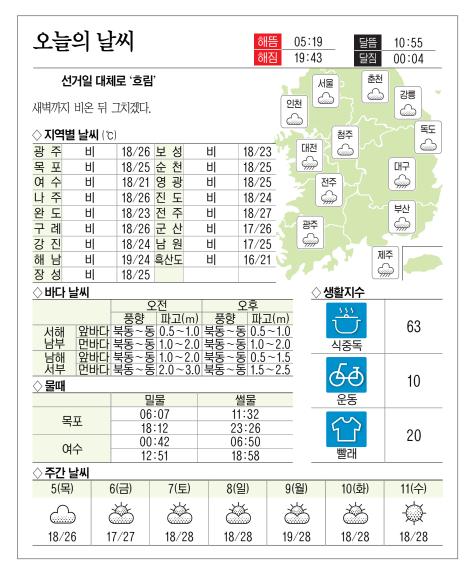
경찰은 애초 2월 말까지 달라진 법 개정 안에 대한 홍보·계도 활동을 벌인 뒤 3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 다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5월 이후로 단 속 시기를 미룬 바 있다. 그나마 5월 이후 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획도 세워 지지 않았다.

별도의 단속장비도 없어 현장에서 경찰 관이 눈으로 움직이는 차량 운전자의 'DMB' 시청 여부를 가려내 단속하기기란 여간 쉽지 않다는 게 담당 경찰들의 공통 된 목소리다.

전남지방경찰청도 사정은 비슷하다. 도 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21개 경찰서 에서 단속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. 경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'포기'했다는 말까지 나온다. 운전자들도 경찰의 계도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알고 있는 탓에 택시·승용차 운전자의 운전 중 DMB 시청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. 시중에서도 운전 중 DMB 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쉽게 구입할 수이다.

일각에서는 관련법 개정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'운전 중 DMB 시청 금지'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 통 문화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

광주서도 세월호 희생자 49재

3일 오전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9재 추도식이 열렸다. /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l

광주지법, 세월호 재판 앞두고 피해자 사전 심리교육

광주지법은 5일 오후 3시 법원 6층 대회 의실에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앞 두고 '세월호 피해자 심리상태 이해를 위 한 사전 교육'을 실시한다.

이번 교육은 이준석(68)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.

심민영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심 리안정팀장이 강사로 나서 ▲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상태와 행동에 관한 이해 ▲피해자들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배려할 사항 ▲재판에 참석하는 직원들이 주의할 언행 ▲법원의 피해자 지원사항에 대한 의 견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.

교육에는 담당 재판부 법관을 제외한 재판 지원 업무를 맡은 법관, 법원 직원뿐만 아니라 공판 검사, 변호인도 참석하게된다. 한편,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15명에 대한 재판은 10일 광주지법에서처음으로 열린다.

등으로 열린다. 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인터넷에서 만나는 **광주일보**

www.kwangju.co.kr

대형인명피해 범죄 징역 100년까지 선고 가능

법무부, 관련 특례법 입법예고

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 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.

이는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 국민담화에서 "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 과"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 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.

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다중인명 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(가칭)'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

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얹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,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선고할 수 없다.

이같은 가중 조항에 따라 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·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있게된다. /연합뉴스

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서 여아 4명 잇달아 성추행

영암지역서 지난 4월 발생 검찰, 60대 선원 구속 기소 학교·교육청선 모르쇠 일관

대낮에 영암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 살도 안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. 하지만,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안일한 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다.

3일 영암경찰과 영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초등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(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)로 선원 박모(64·부산시 동구)씨를 지난달 13일 구속했다.

박 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10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(9)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50m 가량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. 앞서정오께에도 같은 운동장에서 B(7) 양 등 7세 여아 2명에게 다가가 "자전거를 태워주겠다"고 구석진 곳으로 유인, 흉기로 위협해 옷을 벗도록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. 박 씨는지난 4월19일에도 또 다른 여아를 학교운동장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.

박 씨는 자신이 승선하는 화물선이 목 포항에 정박해 있는 틈을 타 이같은 범 행을 저질렀다. 박 씨는 지난 2001년에 도 부산에서 여자 초등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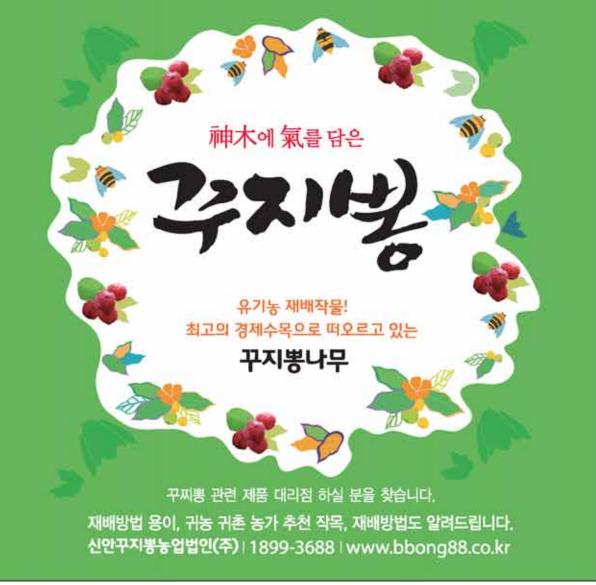
같은 학교에서 잇따라 성추행이 발생 했는데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모르쇠 로 일관해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의 분노 를 사고 있다.

학부모들은 소문을 듣고 학교에 전화했지만 "그런 일이 없다"고 말해 안심했는데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비난했다. 영암교육지원청도 "얘기해줄 수 없다"고 감추기에 급급했다. 학부모들은 CCTV 설치 등으로 '365일 안심학교'를 운영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정작 사건이터지자 사태 파악도 못하고 쉬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.

한 학부모는 "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대비책을 세웠더라면 2차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"면서 "요즘 하도 불안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부모들이 많이들어난 것 같다"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다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 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





(재)전남생물산업진흥원 협약

(재)전남생물산업진흥원

신인군수 생산보증

HANDLE

전남산림자원연구소

🥯 산림지원연구소

제품연구